

【 소방법령 II 】

1. 「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상 임시소방시설 중 간이피난유도선을 설치한 것으로 보는 소방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?

- ① 피난유도선
- ② 비상조명등
- ③ 피난구유도등
- ④ 피난구유도표지

2. 다음은 「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상 무창층(無窓層)에 대한 설명이다. ()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?

가. 지상층 중 개구부(건축물에서 채광·환기·통풍 또는 출입 등을 위하여 만든 창·출입구,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)의 면적의 합계가 해당 층의 바닥면적의 (㉠)가/이 되는 층을 말한다.

나. 개구부의 크기는 지름 (㉡) 이상의 원이 내접(內接)할 수 있는 크기이어야 한다.

다. 해당 층의 바닥면으로부터 개구부 밑부분까지의 높이가 (㉢) 이내이어야 한다.

- | | ㉠ | ㉡ | ㉢ |
|---|-----------|--------|-------|
| ① | 30분의 1 이하 | 50센티미터 | 1.2미터 |
| ② | 30분의 1 이하 | 60센티미터 | 1.4미터 |
| ③ | 30분의 1 이상 | 50센티미터 | 1.2미터 |
| ④ | 30분의 1 이상 | 60센티미터 | 1.4미터 |

3. 「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상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시 소방시설별 점검 장비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소화기구: 저울
- ② 분말소화설비: 검량계
- ③ 제연설비: 기동관누설시험기
- ④ 옥내소화전설비: 소화전밸브압력계

4. 「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상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특정소방 대상물 및 소방시설의 범위를 옳게 짝 지은 것은?

	구분	특정소방대상물	소방시설
①	화재위험도가 낮은 특정소방대상물	불연성 물품을 저장하는 창고	연결살수 설비
②	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특정소방대상물	기계조립공장·주물공장	스프링클러 설비
③	화재안전기준을 달리 적용하여야 하는 특수한 용도 또는 구조를 가진 특정소방대상물	원자력 발전소	옥내소화전 설비
④	「위험물 안전관리법」 제19조에 따른 자체소방대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	자체소방대가 설치된 위험물 제조소등에 부속된 사무실	자동화재 탐지설비

5. 「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상 소방청장이 소방시설관리사에 대하여 자격을 취소하거나 자격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. 1차 위반 시 자격을 취소 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?

- 가. 소방시설관리사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준 경우
 나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합격한 경우
 다. 소방시설관리사가 동시에 둘 이상의 업체에 취업한 경우
 라. 소방시설등에 대한 자체점검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

- ① 나, 다
- ② 가, 나, 다
- ③ 나, 다, 라
- ④ 가, 나, 다, 라

6. 「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상 소방시설의 종류 중 “화재를 진압하거나 인명 구조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설비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?

- ① 제연설비
- ② 소화용수설비
- ③ 연소방지설비
- ④ 비상콘센트설비

7. 「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상 둘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을 하나의 소방대상물로 보는 연결통로의 요건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내화구조가 아닌 연결통로로 연결된 경우
- ② 지하보도, 지하상가, 지하가로 연결된 경우
- ③ 컨베이어로 연결되거나 플랜트설비의 배관 등으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
- ④ 내화구조로 된 연결통로이며 벽이 없는 구조로서 그 길이가 10 m 이하인 경우

8. 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건축허가등의 동의가 필요한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, 건축허가등의 동의요구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가 아닌 것은?

- ① 소방시설 설치계획표
- ② 소방시설의 층별 평면도
- ③ 임시소방시설 설치계획서
- ④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

9. 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소방청장이 정하는 내진설계기준에 맞도록 설치해야 하는 소방시설이 아닌 것은?

- ① 스프링클러설비
- ② 옥내소화전설비
- ③ 연결송수관설비
- ④ 이산화탄소소화설비

10. 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의 변경으로 소방시설의 설치기준이 강화되었을 경우, 기존의 특정소방대상물에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는 소방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?

- ① 의료시설에 설치하는 자동화재탐지설비
- ② 의료시설에 설치하는 자동화재속보설비
- ③ 노유자시설에 설치하는 무선통신보조설비
- ④ 노유자시설에 설치하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

11. 「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상 소화수 수집·처리 설비가 설치되지 않은 중·저준위방사성폐기물의 저장시설에 설치하는 물분무등 소화설비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포소화설비
- ② 할론소화설비
- ③ 이산화탄소소화설비
- ④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소화설비

12. 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용어의 정의에 따른 “소방시설등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?

- ① 방화문
- ② 방화벽
- ③ 비상구
- ④ 방화셔터

13. 「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상 공기호흡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 아닌 것은?

- ① 지하구
- ② 운수시설 중 지하역사
- ③ 판매시설 중 대규모 점포
- ④ 수용인원 100명 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영화상영관

14. 「소방기본법」상 용어의 정의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관계인 : 소방대상물의 소유자·관리자·점유자
- ② 소방본부장 :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 또는 특별자치도에서 화재의 예방·경계·진압·조사 및 구조·구급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
- ③ 특정소방대상물 : 건축물, 차량, 선박(항구에 매어둔 선박), 선박 건조 구조물, 산림, 그 밖의 인공 구조물 또는 물건
- ④ 소방대장 :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등 화재·재난·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현장에서 소방대를 지휘하는 자

15. 「소방기본법」상 소방업무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·시행에 관한 내용이다. ()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?

(㉠)은 화재, 재난·재해, 그 밖의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·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방업무에 관한 종합계획을 (㉡)마다 수립·시행하여야 하고,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- | | ㉠ | ㉡ |
|-----------|---|----|
| ① 소방청장 | | 3년 |
| ② 행정안전부장관 | | 3년 |
| ③ 소방청장 | | 5년 |
| ④ 행정안전부장관 | | 5년 |

16. 「소방기본법 시행규칙」상 소방용수시설의 설치기준이다. ()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?

가. 소화전의 설치기준 : 상수도와 연결하여 지하식 또는 지상식의 구조로 하고, 소방용호스와 연결하는 소화전의 연결금속구의 구경은 (㉠)밀리미터로 할 것

나. 급수탑의 설치기준 : 급수배관의 구경은 100밀리미터 이상으로 하고, 개폐밸브는 지상에서 1.5미터 이상 (㉡)미터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도록 할 것

다. 저수조의 설치기준

- (1) 지면으로부터의 낙차가 4.5미터 이하일 것
- (2) 흡수부분의 수심이 (㉢)미터 이상일 것
- (3) 소방펌프자동차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할 것
- (4) 흡수에 지장이 없도록 토사 및 쓰레기 등을 제거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 것
- (5) 흡수관의 투입구가 사각형의 경우에는 한 변의 길이가 (㉣)센티미터 이상, 원형의 경우에는 지름이 (㉤)센티미터 이상일 것
- (6) 저수조에 물을 공급하는 방법은 상수도에 연결하여 자동으로 급수되는 구조일 것

- | | ㉠ | ㉡ | ㉢ | ㉣ | ㉤ |
|---|----|-----|-----|----|----|
| ① | 40 | 1.8 | 1.0 | 60 | 65 |
| ② | 40 | 1.7 | 1.0 | 65 | 60 |
| ③ | 65 | 1.8 | 0.5 | 60 | 65 |
| ④ | 65 | 1.7 | 0.5 | 60 | 60 |

17. 「소방기본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상 화재의 예방조치 등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위험물 또는 물건의 보관기간은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의 게시판에 공고하는 기간의 종료일 다음 날부터 7일로 한다.
- ②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보관기간이 종료되는 때에는 보관하고 있는 위험물 또는 물건을 매각해야 한다.
- ③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매각되거나 폐기된 위험물 또는 물건의 소유자가 보상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보상 금액에 대하여 소유자와 협의를 거쳐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.
- ④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의 예방상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위험물 또는 물건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그 날부터 10일 동안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의 게시판에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.

18. 「소방기본법 시행령」상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관리기준 중 난로의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?

- ① 난로와 벽 사이의 거리는 0.5미터 이상 되도록 하여야 한다.
- ② 연통은 천장으로부터 0.6미터 이상 떨어지고, 건물 밖으로 0.6미터 이상 나오게 설치하여야 한다.
- ③ 가연성 벽·바닥 또는 천장과 접촉하는 연통의 부분은 규조토·석면 등 난연성 단열재로 덮여써워야 한다.
- ④ 이동식난로는 종합병원·병원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난로가 쓰러지지 아니하도록 받침대를 두어 고정시키거나 쓰러지는 경우, 즉시 소화되고 연료의 누출을 차단할 수 있는 장치가 부착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19. 「소방기본법 시행령」상 특수가연물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?

- ① 면화류는 불연성 또는 난연성인 면상 또는 팽이모양의 섬유와 마사 원료를 말한다.
- ② 사류는 불연성 또는 난연성인 실(실부스러기와 솜털을 포함한다)과 누에고치를 말한다.
- ③ 가연성고체가 특수가연물이 되기 위한 조건은 1,000킬로그램 이상이다.
- ④ 석탄·목탄류에는 코크스, 석탄가루를 물에 갠 것, 조개탄, 연탄, 석유코크스, 활성탄 및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.

20. 「소방기본법」 및 같은 법 시행규칙상 소방지원활동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?

- ① 화재, 재난, 재해로 인한 피해복구 지원활동
- ② 군·경찰 등 유관기관이 실시하는 훈련지원활동
- ③ 위급한 상황에서 구조, 구급, 생활안전 및 위험제거활동
- ④ 집회, 공연 등 각종 행사 시 사고에 대비한 근접대기 지원활동

21. 「소방기본법」상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관계인의 소방활동 조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?

- ① 사람을 구출하는 조치
- ② 소방활동구역을 설정하는 조치
- ③ 경보를 울리거나 대피를 유도하는 조치
- ④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않도록 하는 조치

22. 「소방기본법 시행령」상 소방활동구역에 출입할 수 있는 자가 아닌 것은?

- ① 소방활동구역 주변에 있는 소방대상물의 소유자·관리자 또는 점유자
- ② 의사·간호사 그 밖의 구조·구급업무에 종사하는 자
- ③ 취재인력 등 보도업무에 종사하는 자
- ④ 전기·가스·수도·통신·교통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자

23. 「소방기본법」상 한국소방안전원의 수행 업무가 아닌 것은?

- ① 소방안전에 관한 국제협력
- ② 소방정책의 연구·개발에 관한 사항
- ③ 소방기술과 안전관리에 관한 각종 간행물 발간
- ④ 소방기술과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 및 조사·연구

24. 「소방기본법」상 손실보상의 대상이 아닌 것은?

- ① 위험 구조물 등의 제거활동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
- ② 소방대의 위법한 소방업무 또는 소방활동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
- ③ 위해동물, 벌 등의 포획 및 퇴치 활동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
- ④ 화재 진압 등 소방활동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소방용수 외에 댐·저수지 또는 수영장 등의 물을 사용하거나 수도(水道)의 개폐장치 등의 조작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

25. 「소방기본법」상 벌칙 규정 중 과태료 부과기준이 나머지 셋과 다른 것은?

- ① 제19조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소방자동차를 출동하게 한 자
- ② 제13조 제4항에 따른 소방용수시설, 소화기구 및 설비의 설치 명령을 위반한 자
- ③ 제21조 제3항을 위반하여 소방자동차의 출동에 지장을 준 자
- ④ 제44조의3을 위반하여 한국소방안전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